

2019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I

옴부즈만 제도 소개

- 1. 옴부즈만의 개념 08
-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08
-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09

I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12
-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12
-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14

III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 1. 고충민원의 개념 16
-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17
-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18

IV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0
2. 고충민원 조사·처리 결과	21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50

V

부 록

1. 홍보자료	56
2. 보도자료	60
3. 활동자료	63
4.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4
5.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72

발간사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3월 18일 3명의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래 1년 남짓한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설치 목적과 같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행정기관의 불편·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구제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시민들이 신청한 고충민원을 처리하면서 ‘고충처리’라는 단어에 어울릴 정도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욕만 앞섰던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 옴부즈만들은 시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해 민원인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하나라도 해소시켜 드리고자 민원인의 입장에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해결 방안이 아닌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2년째 운영에 접어드는 2020년은 지난 1년보다 더 나은 위원회 운영을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충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에 대한 담당부서에서의 수용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2019년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공표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민원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보다 더 나은 고충민원의 해결을 위한 마음을 다지고자 이 책자를 발간합니다.

2020년 3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일동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2019년도



I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의 개념
 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



01 옴부즈만의 개념

가. 옴부즈만(ombudsman)이란?

-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함

나. 옴부즈만 제도

-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정부와 공무원들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

02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 · 복잡화 · 전문화 경향

- 행정 재량권 확대로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
- 행정재량 영역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사법제도로 다루기에 통제 곤란

나.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후통제 수단인 사법적 구제수단(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다.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회복

- 고충민원에 대해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간의 갈등 완화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 제공으로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 제고

라.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 공공서비스 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개선 노력

03 **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가. 행정의 통제 기능

- 행정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나.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 기능

- 복잡·다양화 되면서 시민과 행정청, 이해관계 집단간, 지역간 갈등이 증가되고 있으나 소송 등 전통적 분쟁해결 수단으로는 한계
- 시민과 행정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로서의 역할 수행

다. 행정개혁 기능

- 행정 속성상 한번 결정된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하려는 관성으로 인해 스스로의 개선이 어려움
- 옴부즈만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려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주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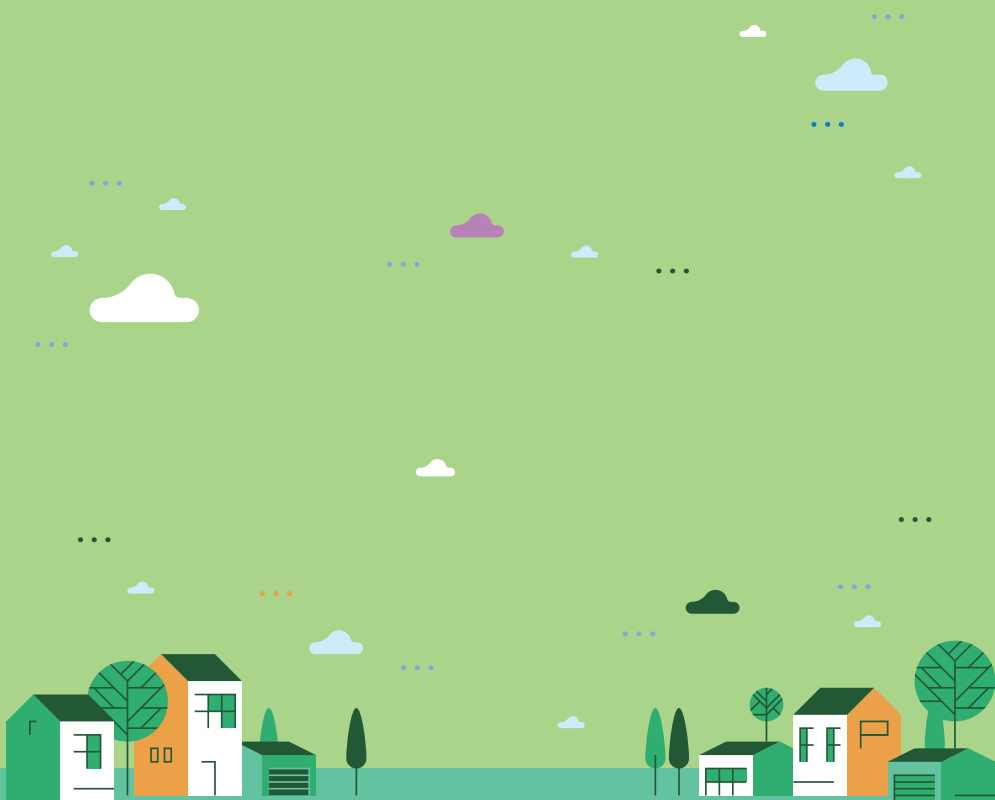
라.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 민원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를 알리는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

마. 민주적·정치적 대변 기능

-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이 아닌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권익 대변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2019년도



II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



01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배경

급속한 개발 및 인구 유입에 따른 복잡·다양한 고충민원 증가와 행정 재량권 확대에 따른 시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과 행정 간에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

0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가.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구성개요

- 신 분 : 위촉직(민간인)
- 임 기 : 4년(연임 불가)
- 근무형태 : 비상근(주 20시간) 합의제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다. 구성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위촉일	주요경력
1	위원장	임우영	2019.3.18.	前)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前) 국회의장 비서관 前)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위원	정덕호	2019.3.18.	前) 한국노총 경기중부 지역지부 정책부장 前)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팀장
3	위원	조복록	2019.9.18.	前) 경기도의회 의원 前) 푸른파주21 상임대표

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 직무관할 기관
 - 파주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파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직무 범위
 - 주민의 신청에 따른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 시장 및 파주시의회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 위 치 : 파주시청 별관 2층
- 주 소 :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 연락처 : 031) 940-4464~4466



〈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경 〉

03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추진 경과



III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2. 고충민원 신청 방법
3. 고충민원 처리 절차



01 고충민원의 개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 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등

■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소속행정기관 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 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

02 고충민원 신청 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 파주시 시청로 51, 2층(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 E-mail : pajuminwon@korea.kr / 팩스 : 031) 940-4089
- 신청서식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비치 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 www.paju.go.kr : 파주시청 홈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우측 상단 배너 ▶ 위원회 소개 및 민원 신청
- 문의전화 : 031) 940-4464~4466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of the Paju City website. The top screenshot shows the main menu with '민원' (Petition) highlighted.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Committee Introduction and Petition Application) page, which includes a '위원회 소개' (Committee Introduction) section and a '민원신청' (Petition Application) section.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역을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읍무조만인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읍무조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설치·운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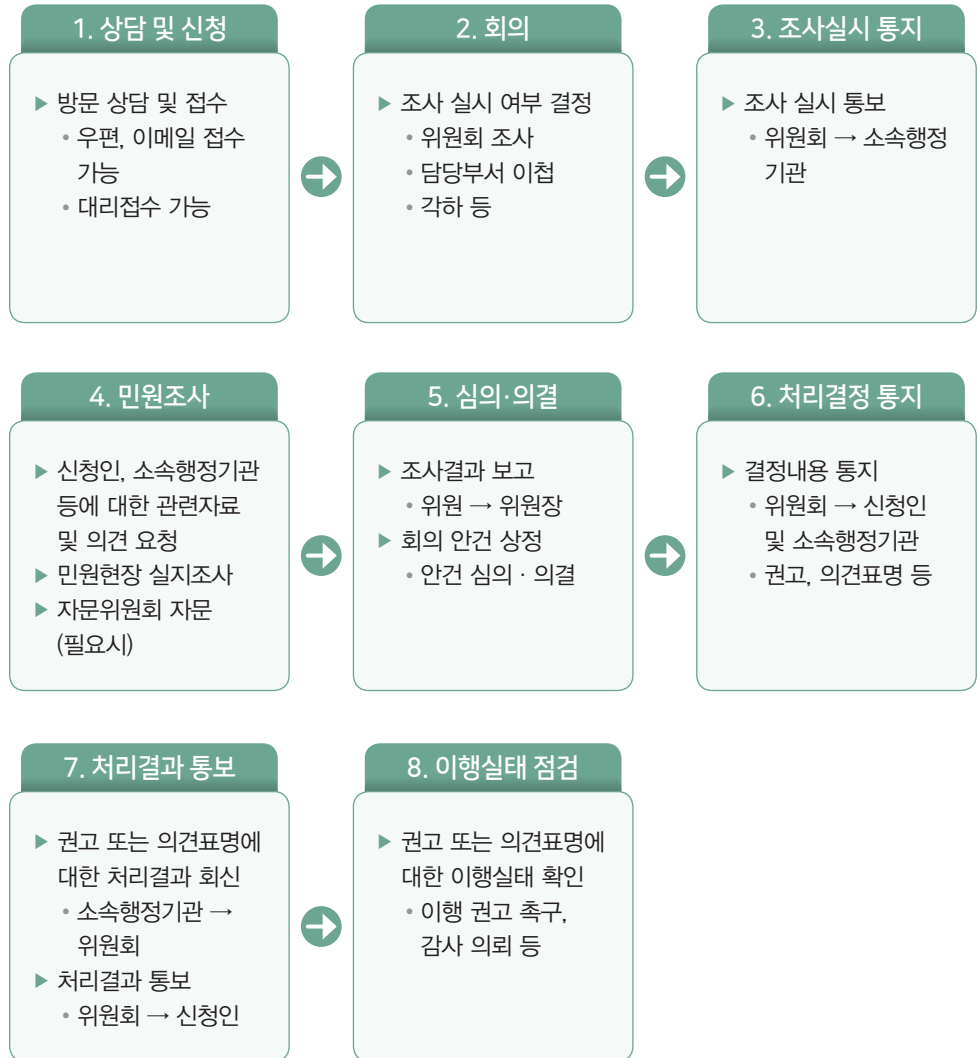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읍무조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및 무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파주시의 처분 결과가 위법·부당하여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ex.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등)

〈 파주시 홈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화면 〉

03 고충민원 처리 절차



IV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결과

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 고충민원 조사 · 처리 결과
 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



01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접수 및 처리 현황

‘19.12.31.기준

합계	위원회 직접조사									미조사		비고 (제도 개선)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합의 권고	심의 종결	기각	각하	취하	처리 중	이첩	각하	
60	29	1	9	1	2	7	5	1	3	30	1	2

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수용 현황

구 분	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권고	제도개선권고
수용	11	1	7	1	2
불수용	1		1		
검토중	1		1		

■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조사여부	내 용
시정권고	여	피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 · 변경 · 개선 등의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여	피신청인의 처분 · 사실행위 · 부작위 등이 위법 ·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권고	여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하는 경우
제도개선	여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여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여, 부	사인 간의 권리 관계 등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각 호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심의종결	여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이첩	부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 파주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취하	여, 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원에 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02 고충민원 조사 · 처리 결과

가. 시정권고

시정
권고

배수로 정비 공사 시 사유지 내 설치한 구조물 철거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



신청취지

- ▶ 파주시가 배수로(구거) 정비 공사 시 본인의 땅을 침범하여 설치한 구조물 (콘크리트 박스)에 대하여 원상복구 요구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2018. 4월 ○○동 배수로 정비공사(현장타설 암거, B1.5m×H1.5m, L=33m)를 시행하면서 사업비 절감 등의 이유로 현황 측량 없이 기존 구거가 형성되어 있는 현황대로 시공하였음.
- ▶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지적선과 구조물의 위치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시사에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결과 현황상의 구거와 지적상의 구거 불일치로 신청인 토지 약 20㎡를 침범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함.
- ▶ 신청인 및 피신청인간 토지 분할매수 등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이 ○○동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시정권고” 함.



의결결과

- ▶ 시정권고



처리결과

- ▶ 수용 : 신청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 철거 완료

나. 의견표명

의견 표명

이장 부정선거 이의 제기 및 행정처리 시정 요구



피신청인

▶ 문산읍장



신청취지

- ▶ 마을 이장 선거에서 대리 투표 및 중복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으므로 이장 추천의 무효 및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민원 제기 이후 이장 임명을 장기간 보류하다 근거에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장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행정처리의 시정 요구



판단 및 결론

- ▶ ○○읍 ○○○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마을 투표를 거쳐 이장 후보자를 추천 하였으나, 대리 및 중복 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어 이장 추천의 무효 및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됨.
- ▶ 피신청인은 제기된 신청취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장 선거에 부정투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이장 후보자 추천서를 반려하고 재추천 하여줄 것을 권고함.
- ▶ 이후, 이장 후보자 추천서가 제출되지 않고 이장 공석 기간이 장기화되자 피 신청인은 이장의 임명 절차를 규정한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음.
- ▶ 사실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기 추천된 이장 후보자를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이는 심의위원회가 정당한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며, 당초 민원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반려했던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 그러므로, 기존에 이장 후보자 추천서를 반려하고 권고한 대로 이장 후보자를 재 추천토록 하고, 추천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이장을 임명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
 - 마을 총회를 통해 이장 후보자 재추천토록 통보 ⇒ 추천서 미접수
 -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 완료

의견
표명

농지전용허가에 비협조적인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신청취지

- ▶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행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법령이나 조례 등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부동의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동 *** 소재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서는 피신청인에게 농지전용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한 결과, “해당 개발행위 신청지가 경지정리 완료된 우량농지로 보전가치가 높으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및 농업 경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부동의 하였음.
- ▶ 그러나, 신청지 주변은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도로 개설로 인해 신청지 3면이 도로로 둘러싸여 주변 농지와 단절되어 있으며, 도로 개설 과정에서 농업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수로가 단절되어 용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 받을 수 없는 등 우량농지로서의 기준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됨.
- ▶ 아울러,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자 했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이에 대한 관리(예방 및 대책 강구 등)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 이에,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및 「농지법」에서 정한 개발 가능한 범위 내의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 : 개발행위 신청 시 주변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농지법」에 따른 적합한 시설일 경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허가) 적극 검토 예정

의견
표명

개인 사유지 도로 원상복구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청취지

- ▶ 마을 내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신청인의 개인 사유지이므로 이 도로와 접해 있는 국유지로 도로를 이전하여 개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민원 대상의 현황도로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인접 토지로의 접근이 가능한 다른 현황도로가 있음에도 도로의 폐쇄로 혹여나 마을 주민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 폐쇄할 수 없는 실정임.
- ▶ 현황도로와 접해 있는 국유지가 있어 사유지 내의 현황도로를 국유지로 이전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 이에, 피신청인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유지 내의 현황도로를 국유지로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조기에 반영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 : 사유지 내의 현황도로를 국유지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20년도에 반영하여 처리 예정

의견
표명

무기계약직 채용 시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공고 시정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신청취지

- ▶ 파주시 직원 채용공고 중 채용자격 기준에서 단순 노무직 등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필수적이지 않은 인력의 채용은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기준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파주시에서 시행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면 안전관리요원, 체육시설 관리, 금연 지도·단속 등 모든 채용분야 응시자격 요건에서 전문직, 단순직, 노무직을 막론하고 1년 혹은 그 이상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음.
- ▶ 그러나, 실무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여부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분야의 실무경력은 제외하여 미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 : 향후 채용 시에는 분야별로 요구되는 전문성의 차이를 반영하여 서류전형 경력기준을 조정 및 검토 ⇒ 2019년 제2회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험('19.7.25.)부터 실무경력 요건을 우대요건으로 변경하여 채용절차 진행

의견
표명

구거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 원상복구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축산과)



신청취지

- ▶ 2005년경 수해복구사업으로 구거 석축 공사 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사유지 상부를 복개 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농업기반시설의 기능 상실 우려 및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취약 구간으로 거부함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면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구거로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복구 또는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 신청지 구거의 일부 구간은 이미 암거가 설치되어 있어 “암거 설치로 수해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으로 자연 재해로 인한 범람 등의 위험이 상존할 우려가 있다.” 라는 피신청인의 목적 외 사용 불허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신청지 구거의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 신청토지의 전 소유자는 2006년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 없이 석축공사를 시행한 것을 원인으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여 “목적 외 사용을 피신청인에게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협조한다”는 조정이 성립된 바 있으며, 당시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신청인 역시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 ▶ 다만, 신청인의 토지에 있는 구거를 원상복구할 경우 공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거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향후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 소유자와 조정으로 합의한 사항과 같이 신청인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검토중 : 목적 외 사용허가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사전컨설팅 신청 및 결과에 따라 처리 예정

의견
표명

공원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사용료 청구 및 원상복구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건설과)
- ▶ 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공원녹지과)
- ▶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청취지

- ▶ 신청인은 종종 소유의 토지에 대해 “○○로 조성 공사”를 하면서 수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해 추가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후 신청인의 동의 없이 가로공원을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가로공원 조성 경위, 행위자 엄벌, 사용료 지불,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가로공원 조성 경위 및 행위자 엄벌 요구에 대해서는 그 시기 및 주체를 특정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
- ▶ 공원으로 무단 사용한 15년 분의 토지 사용료 지급 요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나, 관련법 상 금전채권 · 채무의 소멸시효로 인해 최근 5년간의 사용료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또한, 이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원상복구 요구는 현재 토지의 이용 상태,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에게 그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므로, 쌍방간 협의 · 조정하에 이 민원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미불용지로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① 민원토지에 대한 5년간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 ② 민원 토지를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미불용지로 보상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일부 불수용)
 - 민원 토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지정 완료
 - 도로구역 내 미불용지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 완료
 - 미불용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 가능한 산출근거가 없으므로, 지급 확정 판결문 등 산출근거가 없을 경우 사용료 지급 불가(불수용)

의견
표명

불법 증축 양성화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적용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축과)



신청취지

▶ 불법 건축물을 자진 신고하여 이행강제금 납부 및 건축허가를 득하는 등 양성화 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의 규정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에 대해 완화하는 규정(1.5m → 0.75m) 적용 시한을 넘겨 착공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이를 적용 받을 수 없어 피해가 예상되니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지 안의 공지 완화 기준 적용 시한(2019. 6. 30)을 넘겨 착공신고서를 접수(2019. 7. 2) 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한 것은 없음.
- ▶ 다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고자 이행강제금 납부 및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준이 적용되던 시기에 건축(증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미 착공 및 준공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착공신고는 실제 행위가 없는 단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또한,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하여야 하는 거리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 건축물 및 건축물 내에 있는 제조시설을 모두 철거 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있음.
- ▶ 이에, 사소한 행정절차를 이유로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취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착공신고를 수리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의견표명



처리결과

▶ 수용 : 신청인이 제출한 착공신고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건축 허가 사항대로 착공신고 수리

의견
표명

사유지에 설치된 마을 하수관로 철거 및 원상복구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하수도과)



신청취지

- ▶ 신청인의 토지에 동의 없이 매설되어 있는 마을 하수관로를 철거하여 줄 것과 하수관로 철거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해당 토지 위에 설치된 창고 건물은 철거 후 원상복구(창고 건물 재축)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수관로의 설치는 1987년 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당시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 지난 32년간 신청인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의 철거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는 합당하며 이 민원 요구를 해소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
- ▶ 그러나 하수관로의 철거를 위해서는 하수관로가 설치된 토지 위에 있는 담장 및 창고 건물의 철거가 우선되어야 하나, 건물 철거에 따른 원상복구(재건축)는 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 창고 건물은 신청인이 「건축법」에 따른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것으로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명령의 대상이나 이는 지난 32년간 신청인이 감내한 불편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임.
- ▶ 이에, 쌍방간에 협의 조정을 통해 ① 하수관로의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철거 공사를 실시할 것 ② 창고 건물의 철거 후 원상복구 문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해 민원을 해소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수용 : 하수관로 지상에 설치된 건물 철거 후 하수관로를 철거하고자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나, 신청인이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진행 중단

의견
표명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누락에 의한 피해 배상 대책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및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수당 신청을 하지 못하여 받지 못하게 되어 이의제기 하였으나, 신청주의를 주장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배상 대책 요구



판단 및 결론

- ▶ 파주시는 2012. 11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하여 보훈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2013. 1월부터 파주시 거주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 수당의 지급은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신청인은 2013. 12월 파주시로 전입하였으나 2015. 3월에 이르러 국가보훈처에 주소 변동신고를 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주소 변동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6. 9월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 받은 회신자료에 신청인이 파주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였음.
- ▶ 이후, 피신청인은 2018. 8월에 이르러 신청인에게 보훈명예수당 신청 대상자임을 안내하였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2018. 8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 그러나, 신청인은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보훈명예수당(파주시로 전입한 2013. 12월부터 2018. 7월까지)을 소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조례에 ①고지의 의무가 없음, ②소급지급의 규정이 없음, ③행정심판 청구 안내 등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음.
- ▶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급 지급이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조례 제정의 취지, 국가보훈대상자의 정기적인 현황 파악 및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했던 상태에서 신청주의만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 됨.

- ▶ 또한, 피신청인은 국가보훈처 회신 자료에 따라 신청인이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임을 인지한 2016. 9월부터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다면 2016. 9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착오로 소급 지급된 2018. 1월부터 7월까지의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한 2016. 9월부터 2017.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 함.



의결결과

- ▶ 의견표명



처리결과

- ▶ 불수용 : 수당의 지급은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장기적인 법적 안정성 저해 및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로 불수용

다. 합의권고

합의 권고

건축물 수용에 따른 일부 존치 및 사용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건설과)



신청취지

- ▶ 신청인은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토지 및 건물이 “○○시가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었으며, 보상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수용재결 및 공탁금을 예치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에 부담함을 주장하며 건물 전체를 철거하지 말고 일부만 철거하여 잔여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 및 건물이 “○○시가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어 보상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관련법에 따라 부득이 수용재결 및 공탁금을 예치하여 건축물을 수용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 피신청인은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신청인이 건축물 명도를 하지 않아 빠른 공사 시행(준공)을 위해 부득이 건축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명도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 명도소송 변론기일이 촉박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서로의 주장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시행(준공)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잔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합의권고” 함.



의결결과

▶ 합의권고



처리결과

- ▶ 수용 : 신청인의 요구대로 건축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철거하였으나, 합의 내용과 달리 도로 계획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 ⇒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명도 절차 진행 예정

라. 제도개선권고

제도개선
권고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선 권고



소관기관

- ▶ 파주시장(자치행정과)

제도개선
권고 배경

- ▶ 통·리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임명 절차 및 주민총회 등을 규정함.
- ▶ 그러나, 통·리장의 추천기한, 부적격자의 임명 거부권, 주민총회의 공고 기간, 추천서 제출 기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 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 다수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개선 방향

- ▶ 전임 통·리장의 임기 만료 ○○일 전까지 주민 추천에 의한 후임 통·리장의 임명을 하도록 명시할 것
- ▶ 주민총회에 의해 추천된 통·리장의 임명 거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질이 부족한 통·리장의 임명을 사전에 배제시켜 주민들 간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
- ▶ 통·리장 추천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주민총회 공고일 및 공고 방법)을 규정하여 잘못된 주민총회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것
- ▶ 통·리장 추천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통하여 추천된 통·리장의 추천서 제출기한을 ○○일 등으로 명시할 것



의결결과

- ▶ 제도개선 권고



처리결과

- ▶ 수용 : 개선 방향을 참고하여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제도개선 권고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선 권고



소관기관

-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제도개선 권고 배경

- ▶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거주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신청 서식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토록 규정함.
- ▶ 즉, 국가보훈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주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대상자에게 신청서의 제출을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 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대상자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 또한, 지원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기타 보훈 관련 법률 5개의 적용을 받는 본인 및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국가유공자 이외의 유족 등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개선 방향

- ▶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보훈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한 안내 규정을 마련할 것
- ▶ 지원대상자에서 누락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



의결결과

- ▶ 제도개선 권고



처리결과

- ▶ 수용 : 개선 방향을 참고하여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마. 심의종결

심의 종결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따른 수해방지 대책 요구



피신청인

▶ 월롱면장



신청취지

- ▶ 신청인은 2011.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경험이 있으며, 노후화된 마을안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중인 마을 안길 포장공사 시 기존에 있던 우수 유입 방지 둔덕을 제거함에 따라 또 다시 수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수해방지 대책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현장조사 결과, 재포장 공사중인 도로의 경사도를 볼 때 신청인의 집 방향이 낮아 집중호우 시 수해가 우려될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의 경사도 보강 등을 포함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 그러나, 이미 재포장 작업이 완료되어 마무리 작업으로 선긋기 등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제한된 예산 규모에서 경사도 보강 등의 추가 공사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 이에, 담당 주무관과 함께 수해 예방 대책을 모색하던 중 자체 가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우수 배제 트렌치를 설치하기로 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감사의 글과 함께 민원이 해소됨에 따라 “심의종결” 함.



의결결과

▶ 심의종결



처리결과

- ▶ 심의종결(민원해소) : 수해 예방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우수 배제를 위한 배수로 (트렌치) 설치

심의 종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점 이의제기 및 정비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 ▶ 파주시환경수도사업단장(도시경관과)



신청취지

- ▶ 신청인은 파주시 임시공영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되어 정비를 요구
- ▶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일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에 대한 이의 제기



판단 및 결론

- ▶ 단속된 임시공영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일반 주차구역과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 그러나, 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된 흰색 줄은 오랜 사용으로 인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민원 조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주차구역 바닥에 표시된 라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광색 줄로 재정비하여 조치 완료함.
- ▶ 주차구역 단속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것은 과태료 부과 시 건별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기작업 후 과세대상을 선별하는 수기 시스템 사용으로 매월 1,200여 건의 신고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나, 2018. 12월 인력 총원(1명) 및 신고·접수 처리 부과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개선 완료함에 따라 “심의종결” 함.



의결결과

- ▶ 심의종결



처리결과

- ▶ 심의종결(개선완료)
 - 공영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 라인 정비 완료
 - 인력총원(1명) 및 신고·접수 처리 부과 시스템 도입 완료

바. 기각

기각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 매수 요청 등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도시개발과)



신청취지

- ▶ 피신청인이 시행 예정인 ○○○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장기간 미집행중이었던 이 사업의 해제를 요구하며,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 구간에 편입된 건축물의 사용이 어렵게 되므로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동 도시계획도로는 1980. 10월 최초 고시 이후 총 연장 285m 중 220m가 기 준공되었으며, 민원 대상지는 그동안 시의 재정 여건 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잔여구간 65m를 개설하는 사업임.
- ▶ 이 민원 사업의 시행이 장시간 소요되어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의 고충은 이해되나, 사업 시행지 인근에는 ○○, ○○○○아파트, 종교시설 등 1,441세대 4,103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 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 연계 및 주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리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도로 구간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지의 경우 신청인이 소유하였을 당시 편입 토지와 구분되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며, 잔여지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본래 건물의 부대 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업 시행으로 본래 건축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
- ▶ 또한, 잔여지가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 하는 등 토지 사용에 현저히 곤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각”



의결결과

▶ 기각

기각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 및 준공 처리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신청취지

▶ 피신청인이 ○○읍 ○○리 *** 외 4필지상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줄 것과 준공 처리 요구



판단 및 결론

- ▶ (주)○○○○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얻어 1998. 3월 민원 신청지에 차고지 부대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現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였음.
- ▶ 이후, (주)○○○○은 2002. 12월 법인 해산 및 2005. 12월 법인 청산되었으며, 신청인은 법인 해산 이후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 8월 민원 신청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토지 소유자와 쌍방간에 작성한 합의 각서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모든 권리 등을 승계 받았다고 이해하였음.
- ▶ 신청인은 2016. 4월 피신청인에게 (주)○○○○가 허가 받은 개발행위의 권리가 토지의 매입과 함께 본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허가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하였으며, (주)○○○○가 청산됨을 확인하고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음.
- ▶ 이에, 신청인은 토지 매입에 따라 모든 권리가 승계되었으므로 준공검사 반려 및 취소 처분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각하 처리되었음.
- ▶ 또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등과 관련하여 명의 변경 신청 등의 행정절차 없이 토지 소유권의 이전만으로는 허가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준공검사 반려 및 (주)○○○○가 받은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기각” 함.



의결결과

▶ 기각

기각

외국인 혼인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민원봉사과)



신청취지

- ▶ 외국인 혼인신고 시 국적 확인 등을 위한 제출서류에 신분증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신분증 원본 제출을 사본 등으로 대체하여 주기를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외국인 혼인 신고 대행 시 신청서 상 첨부서류 5번 “외국인의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중국인의 경우 미혼 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각 1부”에 따라 사본이 가능함을 주장함.
- ▶ 그러나, 이는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중혼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이며, 첨부서류 7번(신분확인)에 따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신분증명서 확인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의 원본을 요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기각”



의결결과

- ▶ 기각

기각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허위 작성에 따른 허가 취소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지역발전과)



신청취지

- ▶ 신청인이 운영하는 축사 인근에 타인이 축사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축사 부지로 진출입하는 진입도로를 실제 현황과 달리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피신청인은 ○○면 ○○○리 ***-에 축사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지로 진출입 도로를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였으나, 허가 이후 진출입 도로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음.
- ▶ 신청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도면이 실제 현황과 달리 진입도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신청인의 축사 운영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당연하므로 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함.
- ▶ 수허가자가 제출한 도면 중 개발행위허가지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신청인 축사의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실제 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 ▶ 이 도로는 신청인이 본인의 축사 부지 조성 당시 부지 내 농경지 통로로 이용되던 것을 폐쇄하고 대체 통행로로 개설한 것으로 당시 신청인의 허가 서류 및 건축물 현황도에 농경지 통행로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수허가자는 이 대체 통행로의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하였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허가의 취소는 수허가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취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음.

- ▶ 그러므로,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한 피신청인의 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수허가자가 농경지 통행로 내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임의 작성한 사항을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판단하여 허가를 취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며, 농경지 통행로와 관련하여 통행권을 다투고 있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구에 대하여 “기각” 함.



의결결과

- ▶ 기각

기각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취소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신청취지

- ▶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 지붕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가설건축물 (축사-계사) 신고를 하고 이 가설건축물 지붕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설치를 불허가 하는 것은 잘못 되었으니 허가하여 줄 것을 요구
- ▶ 피신청인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세, 건물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업을 하고자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건축물 지붕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 이후, ○○동 *** (전)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이 가설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파주시장(기업지원과)에게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7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하다고 협의 회신함에 따라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한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신청인이 신청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가설 건축물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 ·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음에 따라 “기각” 함.
- ▶ 아울러,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면허세는 이미 신청인이 등록 면허 증을 교부 받았으므로 환급 사유가 없으며, 취득세는 실제로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 취소 처리 후 취득세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함.



의결결과

▶ 기각

기각

공장설립허가 관련 유권해석 및 시정 요구



▶ 파주시장(산림농지과)



신청취지

- ▶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불가 의견으로 협의함에 따라 불가 사유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법적 근거 없는 재량권 등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읍 ○○리 **-*에 공장 설립 및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부지매입을 하고 파주시장(지역발전과)에게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전산지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부적합 함”으로 회신하였음.
- ▶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보전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한 행위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6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고 있음.
- ▶ 그러므로, 신청인이 사전심사 청구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의 사전협의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보전산지 내 행위제한)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어 피신청인의 판단에 위법·부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각”
- ▶ 아울러, 민원 신청지는 보전산지, 농림지역, 군사보호시설 등이 중첩되는 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신청(산지전용 의제)으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안내함.



의결결과

▶ 기각

기각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노인장애인)



신청취지

▶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장애인과 함께 주행 중 용변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에 대해 부과 취소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장애인과 함께 마장호수공원 인근을 주행 중 동석자가 용변이 급해 마장호수공원 내 주차장에 들어갔으나, 장애인 주차구역만 비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며, 이를 본 공원내 시민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신고하였음.
- ▶ 이에, 피신청인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2019. 4월 사전납부 고지서(의견제출)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의견제출이 접수되지 않음에 따라 2019. 8월 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2019. 9월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주차표지가 없는 신청인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위법·부당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또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 과태료의 부과 및 체납에 따른 독촉 고지서가 발송된 현 시점에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기각” 함.



의결결과

▶ 기각

사. 각하

각하

현황도로(마을안길) 포장 등 도로관리 여부 사실 확인 등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청취지

- ▶ ○○면 ○○리 현황도로(마을안길) 관리 여부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니 파주시의 관리 여부 등 제반 사항을 파악하여 줄 것을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신청지 현황도로(마을안길)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관리 여부 등에 대해 여러 부서에 민원을 신청하였음.
- ▶ 그러나, 파주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내용이라기 보다는 책임 회피성의 단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답변을 반복하는 등 신청인의 입장에서 민원 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임.
- ▶ 또한, 신청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해서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을 들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는 법 제9조(비공개정보대상)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됨.
- ▶ 그러나, 신청인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담당 재판부에 도로관리 여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피신청인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사인 간의 권리관계 및 이에 따른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각하” 함.



의결결과

- ▶ 각하

각하

용도폐지 후 매각한 도로부지 원상복구 요구



피신청인

- ▶ 파주시장(회계과),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청취지

- ▶ ○○읍 ○○리 농경지 출입을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던 중 매각에 따른 동의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의 부지 사용으로 인해 도로가 협소하여 트랙터 등 농기계의 진출입이 어려우므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원상복구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은 민원 신청지에 대해 2011. 9월 피신청인에게 도로점용허가를 득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나, 민원 신청지의 지분 공유자 측에서 도로점용허가 부지의 관리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도로 용도폐지 절차를 진행함.
- ▶ 피신청인은 도로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정작 도로 점용허가 부서에서 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지조사 결과(도로 밖의 토지와 잡종지 상태로 공익목적으로 활용은 필요 없음.)를 근거로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지분 공유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함.
- ▶ 이후 신청인은 “도로점용허가처분의 효력이 존재하고, 도로부지의 용도폐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민원토지에 대한 용도 폐지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는 인정되나 청구 취지의 내용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된 바 있으며, 토지 소유자와의 통행권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통행의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되었음.
- ▶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의 도로 용도폐지 및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담당자의 징계처분이 완료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용도폐지 후 매각한 토지를 원상복구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해당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파주시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인간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이므로 “각하” 함.



의결결과

- ▶ 각하

각하

토지사용에 대한 문의



피신청인

▶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신청취지

- ▶ ○○면 ○○리 소재 토지(주택 포함) 매입 후 경계측량을 한 결과, 매입한 토지의 일정부분에 현황도로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되었으며, 매입 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및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요구



판단 및 결론

- ▶ 신청인의 청구 취지는 2019. 4월 토지를 매입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결과, 매입한 토지의 일부분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당장 사유지를 점용한 현황 도로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 보다는 토지 매도 시 이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매입 당사자가 신청인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 ▶ 이 도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1966. 5월부터 지적상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민원 신청지와 접해있는 도로부지이며, 국유지(기획재정부)로 확인됨.
- ▶ 현장확인 결과, 신청인의 토지에 설치된 주택 등 부대시설도 신청인 소유 토지 경계를 벗어나 설치되어 있는 등 신청지 일대는 오래전부터 정확한 경계측량 없이 건물 등이 건축되어 경계가 상이한 건물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 그러므로, 신청인의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은 인정되나, 도로를 국유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판단의 적격이 있음을 안내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각하”
- ▶ 아울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될 경우 재산세 감경 또는 비과세 대상임을 안내함.



의결결과

▶ 각하

각하

잘못된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 해결 요구



피신청인

▶ 파주시장(회계과)



신청취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면 ○○리 ***-*에 대해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부당한 대부계약 및 과다한 대부료 산정 기준(공시지가)으로 대부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이로 인해 체납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신청인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대부료 부과 기간 및 대부료 산정 기준 (공시지가)을 조정하여 재부과 요구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국유지의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기준에 대해 피신청인이 행정처리를 잘못하여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간 신청인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제기하여 패소, 각하 등 처리된 자료를 볼 때 대부기간 및 대부료 산정에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즉, 대부계약에 따라 일부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은 피신청인과 계약한 대부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 중 대부가 불가능한 임야, 구거 등 면적 축소, 현황측량 후 대부면적 재산정 등을 통해 적정하게 계약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대부료 산정기준이 주변 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부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해당 부지의 지목 상 기준이 아닌 실제 사용되는 토지의 이용 목적(거주, 기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피신청인이 국가로부터 위탁 관리해 오던 민원 신청 토지에 대한 관리 사무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2011. 6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피신청인은 민원 신청지에 대한 대부료의 징수·부과 등에 권한이 없으며, 이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구제 절차가 완료된 사항이므로 “각하” 함.



의결결과

▶ 각하

각하

주차타워 옆 무료 노상 주차장 철거 요구



▶ 파주시장(도시경관과)



신청취지

- ▶ ○○면 ○○리 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축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주차타워 인근 도로에 무료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노상 주차장을 폐쇄하고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구



판단 및 결론

- ▶ 주차타워 인근에는 ○○○공장 설립으로 원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주자택지 (60여개 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주자택지와 공장 사이의 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음.
- ▶ 이주자택지 측에서는 택지 내 주택, 상가를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주차 가능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택지 내의 도로에도 평행주차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함.
- ▶ 반면, 신청인은 이 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양측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주자택지 측과 신청인의 의견을 절충하여 합의한 “주정차금지구역 해제 건”을 파주경찰서 ‘교통안전 시설 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음.
- ▶ 파주경찰서(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3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근 주차타워를 감안하여 상가 측 편측으로만 평행주차장을 설치(37대)하는 것으로 가결하여 노상 주차장이 운영 중임.
- ▶ 그러나, 도로에 설치되는 주차장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노상주차장의 폐쇄 또한 설치할 때와 같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각하”함.



의결결과

▶ 각하

03 기타 민원 처리 결과(이첩 등)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	메일	진○○	• 경의선 배차간격 조정 및 열차 증차 요구	• 경의선 운영 및 관리주체인 한국철도공사에 경의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를 지속 건의하고 있음을 안내	
2	방문	김○○	• ○○○읍 집창촌 철거 및 단속 요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 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	
3	방문	김○○	• 금촌역 택시 승강장에 공공 화장실 설치 요구	• 공중화장실 설치 시 승차장 면적 감소 및 관리 등의 문제로 찬반이 나뉘고 있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안내(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에 따라 미추진)	
4	메일	김○○	• DMZ 관광시 단체버스 출입제한(30인 이하) 기준 완화 및 셔틀버스 이용 관련 불편함 개선 요구	• 제3땅굴에 주차할 수 있는 수용 가능 차량이 45대, 도라전망대 20여대로 30명 미만의 경우 자차로 출입시 민북관광 운영이 불가능함을 안내	
5	팩스	권○○	• 공사 현장에서 공사 차량 등이 세류시설을 거쳐 나올 수 있도록 비산먼지 억제조치 요구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이 있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과 아울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세류시설 통과 등 억제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안내	
6	메일	임○○	• 지분을 쪼개 건축된 빌라에 생활폐기물 보관소, 상수도 수압 등에 문제가 있어도 관리주체가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항 및 인근에 소각으로 인한 피해 해결 요구	• 폐기물 보관통 등은 다세대주택 입주민이 구매하여 비치, 상수도 수압은 기설치된 가압펌프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된 사항으로 입주민간 협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무단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지속 점검 중임을 안내	
7	방문	황○○	• 신청인 토지가 인근 토지와 경계가 중첩되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 지적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	• 6.25 전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지적복구 과정에서 경계가 일부 중복되었으나,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미승낙시 확정 판결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음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8	메일	임○○	도로에 차량 통행시 원인 불명의 덜커덩 소리가 심하니 조치 요구	해당구간은 사유지로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하나 응급복구 차원의 보수는 완료하였으며, 개인 사유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이후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사업 검토가 가능함을 안내	
9	메일	나○○	파주시에서 발주한 자전거도로 공사 도급자에게 받지 못한 중장비 사용료 및 석축공사 대금 체불 해결 요구	선급 지급 이전·후 시공사에 수차례 체불대금 해소를 요청·지시하였으나, 시공사의 계약조건 미이행, 연락두절 등에 따라 계약해지 및 타절 준공 후 준공금액에 대해 관련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여 처리가 완료된 사항임을 안내	
10	메일	허○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파주시의 계획문의	해당 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파주시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워 자동 실효될 예정이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안내	
11	팩스	김○○	고3자녀 급식비, 교육비, 학교운영비 감면 요구 및 버스 배차시간, 정류장 표지판, 의자 등 설치 등 요구	파주교육지원청 및 고양시장에게 민원내용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안내	
12	메일	엄○○	농지원부 발급과 관련하여 농지의 기준 문의	농지의 기준 및 농지원부 작성기준 안내	
13	메일	이○○	버스 정류장 설치 요구	해당 지역은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승강장 설치공간이 없어 설치가 어려우며, 향후 도보 확장 등 도로 여건 변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	
14	메일	김○○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구거 안전 펜스 설치 요구 및 방역 요청	해당지역 쓰레기 처리 및 경고판 설치, 방역 완료하였으며, 구거 안전 펜스 설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여 줄 것을 안내	
15	메일	김○○	가로수 송충이 방역 요청	방역 완료하였음을 안내	
16	메일	예○○	도로(인도) 보수 요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0년 본 예산 수립 후 공사 예정임을 안내	
17	메일	정○○	도로(인도) 보수 요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0년 본 예산 수립 후 공사 예정임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18	메일	이○○	• 임야에 무허가 창고 건축으로 인한 마을환경 훼손 조치 요구	•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 조치 중임을 안내	
19	메일	이○○	• 태풍피해 접수 거부에 대한 답변 요구	• 태풍피해 접수 당시 다수의 접수건 처리 및 문의전화 폭주 등으로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데 대해 사과 및 양해를 구함	
20	메일	박○○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파주시의 계획 문의	• 용도지역 변경은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으로 파주시에서 진행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초조사가 완료되면 입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	
21	메일	안○○	•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설계한 지원자가 당선된 사유 요구 및 이의 제기	• 설계공모시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지침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	
22	메일	정○○	• 행정복지센터 설계공모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설계한 지원자가 당선된 사유 요구 및 이의 제기	• 설계공모시 위법한 사항은 없으나 지침을 명확히 하여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	
23	메일	김○○	• 위험 수목 제거 요구	• 위험수목 제거 완료하였음을 안내	
24	메일	이○○	• 버스 정류장 설치 요구	• 해당 지역은 버스정류소 주변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승강장 설치공간이 없어 설치가 어려우며, 향후 도로 확장 등 도로 여건 변화 시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안내	
25	메일	이○○	•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매 및 살처분 후 대책 문의	• 양돈 축산인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안내	
26	메일	김○○	• 위험 수목 제거 요구	• 해당 수목이 사유지 내 존재하는 수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거가 불가함을 안내	
27	메일	설○○	• 와동교차로 정체 해결 요구	• 교차로 정체 해소방안에 대해 LH와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 개선계획 등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안내	
28	메일	김○○	• 정류장을 무정차한 버스 고발	• 버스 무정차 통과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 중임을 안내	

연번	접수방법	성명	신청취지	처리결과	비고
29	메일	송○○	• 하수도 공사로 인한 차량 타이어 손상 보상 요구	• 하수도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타이어 교체 비용 지급	
30	메일	안○○	• 인근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 요구	• 인근 신축 공사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차면시설 설치, 공사중 훼손 된 경계석 및 펜스 등 보수토록 지도하 여 조치하였음을 안내	
31	메일	안○○	•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해결 요구	•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개 인 사유지로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 는 사항이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 할 수 있어 사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 실 것을 안내	각하
32	방문	박○○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인 허가 관련 부당한 진입 도로 확보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 위원회 조사 중 원에 의해 취하	취하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2019년도



V

부 록

1. 홍보자료
 2. 보도자료
 3. 활동자료
 4.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01 홍보자료

가. 홈페이지

파주시청 홈 문화관광 On 시장실 파주시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가, + - KOR ENG CHN JPN

한반도 평화수도 PAJU 소통·참여 민원 정보공개 뉴스·소식 파주소개 분야별정보

모든신청 문화행사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파주시 민원 해결사
읍무즈만이 도와드립니다.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문의전화 : 031-940-4464-6
9/9 II 전제보기

업무 및 직원 검색
찾으시는 업무 또는 직원을 입력해주세요. 검색

금주의
첨업정보
오늘의 날씨
2020.01.06
-0.3°C
알자리
정 보
위크넷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든
날짜

나의 관심정보
위원의 자료실 정찬합시다 파주시민역 우리고장 파주 ...

전체 방문자 관심정보
교육프로그램 신청 채용공고 고시공고 세종식 보도자료 ...

전체 세종식 고시공고 입법예고 채용공고 보도자료

세종공고 2020년 기간제근로자 (채남실태조사) 채용공고 2020-01-06
보건소 "2020년 상반기 보건소 운동교실 회원모집 안내" 2020-01-06
고시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에 따른 청문회... 2020-01-04
고시공고 이문자종자 무등록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20-01-03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최중환입니다.
2020년신사 공약사항

2019년 파주시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4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파주시청 홈 문화관광 On 시장실 파주시의회

로그인 회원가입 가, + - KOR ENG CHN JPN

한반도 평화수도 PAJU 소통·참여 민원 정보공개 뉴스·소식 파주소개 분야별정보

민원

종합민원안내
민원현황·서식
온라인 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위원의 자료실

여권민원
차량종합민원
민원신고센터

위원회 소개 및 민원신청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읍무즈만이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판단하여 시장공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고충민원 해결 및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읍무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이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3명(4년, 단임)

설치·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파주시 읍무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파주시의 처분 결과가 위법·부당하여 억울하다고 느끼는 때(ex. 부당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행정기관 잘못으로 인한 피해 등)

나. 전광판 및 SNS



〈운정행복센터 전광판〉



〈파주시청 트위터〉



〈파주시청 페이스북〉

다. 파주소식지



〈 파주소식지 2019. 6월호 〉



시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감사관 읍무즈만팀

부담한 일이 있다면 읍무즈만을 찾아주세요

감사관 읍무즈만팀은 공무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민원을 조사·처리하며,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하고, 유익한 시책이 제정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서다. 올해 3월 18일, 2명의 위원들 읍무즈만으로 유익한 시민에게 만날 더 다가서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다.

읍무즈만팀 위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민간인 신분인 읍무즈만 위원들은 좀 더 시민의 편에서 민원사항이 융통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민원인은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회의를 통해 조사, 이월, 기각 등을 결정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법령을 검토한다. 필요하면 현장 확인도 진행한다. 읍무즈만은 접수 60일 이내 조사·판단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고, 30일 이내 권고·의견표명에 대한 해당 부서의 처리 결과를 시민민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지난 4월에는 월곶면 도로 제방공 공사할 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단막이 없어져 수해 피해가 우려한다는 민원사항이 발생했다. 담당부서는 사업이 부족으로 추가 공사가 어렵다고 밝혔고, 고충처리위원회 위원들이 중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조율한 결과, 담당부서가 가을 예산을 발급하면서 수해 방지를 위한 트랜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 민원인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민원이나 여간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등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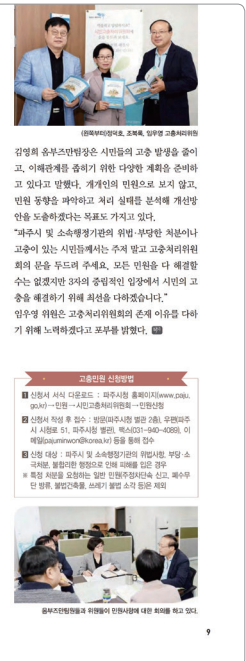
임우영 위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러 지자체가 읍무즈만을 신청했지만, 무단한 소용원 지자체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파주시는 읍무즈만을 적극 활용에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신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회 팀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은 이미 담당자의 불친절,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해 불만을 겪었거나 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항을 해결하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오셨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 그리고 법, 규정이 아니라 여간상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감하지 않고 조전 요구를 수용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용은 주무관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방문한 민원인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경청한다고 덧붙였다.

“읍무즈만 팀 직원들은 민원을 상대하면서 감정도 몇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시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기 감사관은 읍무즈만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에 꼭 필요한 팀이라고 말했다.



강영희 읍무즈만담당자는 시민들의 고충 발생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민원으로 보지 않고, 민원 동향을 파악하고 저리 실태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주재 말고 고충처리위원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3자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우영 위원장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루를 밝혔다.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 민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신청

■ 신청서 작성 용도 : 행정처분(시정·제도개선·의견표명) 시정권고, 유익한 시책이 제정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부서다. 올해 3월 18일, 2명의 위원들 읍무즈만으로 유익한 시민에게 만날 더 다가서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하고 있다.

■ 신청 대상 : 파주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사항, 부당한 처분, 행정처분 불합당에 대해 민원신청한 시민, 읍무즈만 위원, 행정처분, 시정·제도개선 등 민원 처리

읍무즈만팀 위원들이 민원사항에 대해 공무원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절차대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민간인 신분인 읍무즈만 위원들은 좀 더 시민의 편에서 민원사항이 융통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 파주소식지 2019. 11월호 〉

02 보도자료

경기도민일보

2019년 03월 19일 화요일 005면 사회

고충민원해결사 옴부즈만 위촉

파주시, 정도락씨 등 3명 중립적 일처리



파주시가 정도락씨 등 3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파주시는 18일 정도락씨 등 3명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

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업무를 하며 임기는 4년이다.

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10월 조직개편 시 감사관에 옴부즈만팀을 신설했으며 올 1월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해 적격심사 및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했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언제든지 근무시간 내 파주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031-940-4089) 또는 이메일(pajuminwon@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940-4464~6)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이성훈기자

파주시, '경기도 청렴대상' 기관부문 장려상 수상

이종태 기자 입력 2019-07-02 14:38:09

파주시가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청렴도 향상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 하위권을 맴돌다 민선 7기 최종환 시장의 취임과 함께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시정 핵심과제로 삼아 '청렴한 파주 만들기'에 매진하면서 일부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청렴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자기관리 청렴평가' '민간보조사업 및 자본적 대행사업비 원가 심사 확대' '고위공직자·신규공직자인허가 담당자 등 특별교육' '명예·민간 전문 감사관 활성화'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운영' 등 3개 분야 32개 운영과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향하며 '우수기관'에,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1단계 상승한 '우수' 등급을,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되는 등 청렴도가 크게 향상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대외적으로 파주시가 청렴함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HOME > 정치 > 경기

파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김은섭 | 승인 2020.01.14

파주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운영 및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개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기관 유형별로 상대평가를 진행 후 5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전년 대비 2개 등급 상승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우수함을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처리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관리, 보완 2, 5, 7제도, 사전심사청구제도, 실무종합심의회, 민원후견인제도, 목요일간민원실 운영, 무료법률상담,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의 차별화된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 모두 만족할 최고의 민원서비스 행정을 펼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파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3 활동자료



시흥시 호민관제도 벤치마킹('19.4.4.)



국민권익위 주관 워크숍('19.5.21.)



위원회 회의(안전 심사 및 논의)



개발행위허가 준공 요구('19.6.13.)



개발행위허가 취소 요구('19.6.25.)



부당한 진입도로 확보 요구('19.9.10.)



음식물쓰레기 중량제 설치 요구('19.12.11.)



국민권익위 방문 컨설팅('19.12.18.)

04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1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494호, 2019. 5.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행정기관등”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공기업, 출연기관, 법인·단체,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옴부즈만”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촉하는 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3. “사무국”이란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법 제2조 제5호의 민원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직무·구성 등

제3조(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에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옴부즈만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의 옴부즈만 회의로 대행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고충민원 처리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옴부즈만 활동 보고에 따른 의결 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집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시장 및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3.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5조(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옴부즈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한다.(개정 2019.5.10)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7조(대표옴부즈만) ① 옴부즈만 중에서 대표옴부즈만을 호선하며, 대표옴부즈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옴부즈만 회의) ① 옴부즈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②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본다. 다만,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합의권고
2. 제22조에 따른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3. 제23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4. 제27조에 따른 감사의뢰
5. 중전 의결례의 변경

④ 옴부즈만 회의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한다.

제9조(옴부즈만의 직무관할기관) 옴부즈만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10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소속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경우 특별한 이해관계의 범위는 법 제17조 제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2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조사·처리 및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되는 옴부즈만은 제8조 제4항에 따른 재직 옴부즈만의 수(數)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12조의2(옴부즈만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2019.5.10)

- ① 옴부즈만의 선임을 위하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1. 옴부즈만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파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4. 지역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
 5.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옴부즈만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
- ⑤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원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구체적 증거나 사실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속행정기관 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소속행정기관등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시정의 권고와 의견의 표명)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3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나 그 밖의 정책 ·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위원회는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나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4장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9조(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시장은 위원회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5.10.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05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3. 8.] [경기도파주시규칙 제655호, 2019. 3. 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옴부즈만 운영 및 관리

제2조(옴부즈만 회의 소집)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갈음하여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개최일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 회의에서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옴부즈만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 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옴부즈만이 결정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한다.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옴부즈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파주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충민원 중 전문적·기술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
 - 2. 그 밖에 ombudsman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 ⑤ 자문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조사·처리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파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손도장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신청서의 보완) ①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시밀리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신청의 대리)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제13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문서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

제15조(조사 실시 통보)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제17조(정당한 사유) ① 조례 제18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때
 2.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을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
 3.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②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③ 대표옴부즈만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 유지와 옴부즈만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합의) ① 위원회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합의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확인한다.

-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사결과와 보고 등) ①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옴부즈만 회의에 부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결정의 통지 등) 위원회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조례 제27조에 따라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 결과 소속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파주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신분증명서) ①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해촉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을 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 활동 지원부서의 장이 대리할 수 있다.

제28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9조(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소속행정기관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사항을 파주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고와 함께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31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32조(문서 및 관인) 위원회는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라 청인(廳印)을 가진다.

제33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의한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4조(정보의 보호) 옴부즈만등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보고서

발행일 2020년 3월
발행처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편집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1, 2층
(아동동, 파주시청 별관)
전화 031-940-4464~4466
팩스 031-940-4089
디자인 경기애드 (031-946-1972)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